#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6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이연희·정성호·김성환

임오경 · 이병진 · 황 희

김유덕 • 서미화 • 박홍배

홍기원 • 어기구 • 서영교

임미애 · 민형배 · 박 정

이정문 • 정준호 • 박상혁

허종식 • 한민수 • 문진석

김준혁 의원(2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,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 하여 도서벽지·낙도지역의 학생, 지역아동센터의 아동, 학교 밖 청소 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 회를 제공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경우,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 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 애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·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 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8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
- 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
- 3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4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- 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
- 6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 상자
-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

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

- 8.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
- ② 국가 및 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
- 2.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3.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 · 운영
- 4.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
- 5.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ㅎ

제8조(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도서・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・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기원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기자녀등 교육취약

1.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

업을 할 수 있다.

계층 아동 · 청소년의 발명교육

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

 2.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

 보급

개 정 안

제8조(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「도서・벽지 교육진흥법」

   제2조에 따른 도서・벽지에

  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
- 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

- 운영
- 4.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 4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·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 하기 위한 사업
- 3.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 3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  -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  - 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세2 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과 그 자녀
  - 6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| 제2조제3호에 따른 특 수교육대상자
  -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층의 자녀
  - 8.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・청소년
  - ② 국가 및 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각 호의 지 원사업을 할 수 있다.
  - 1.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
  - 2.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 - 3.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

<u>· 운영</u>
4.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
<u>구 지원</u>
5.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
•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
하기 위한 사업